■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구조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심의일자	2024. 5. 2. ~ 5. 10.

건축종별	[ ]신축, [○]증축, [ ]대수선, [ ]기타
건축주	현대○○○㈜

대지현황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지번 : 1-1번지	관련지번 : 107필지	
	대지면적 : 238,037㎡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 44,447.3㎡	건폐율 : 18.67%	층수 지하 : / 지상 : 3층
	주용도 : 공장	구조 : 일반철골구조	세대수(호)/동수 : 세대 / 1동
	최고높이 : 28.33m	용적률 : 28.3%	연면적 : 67,364.76㎡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종합의견	1. 구조설계 전반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데크슬래브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이 강재 데크의 한 부위에 집중되어 시공 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명기바람 2. 고장력볼트로 F10T 적용인지 S10T 적용인지 확인바람 3. 크레인 RUN WAY GiRDER의 경우 KDS 14 31 25 4.1.10. 집중하중을 받는 웨브에 대한 국부항복, 크리플링, 횡좌굴 및 압축좌굴강도에 대한 소요강도가 한계상태의 설계강도에 적합한지 재확인 하도록 할 것 4. 가공조립공장 3층 철골보의 경우 20m이상의 장스팬으로 BEAM과 GIRDER의 상대처짐으로 인한 슬래브의 균열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크레인 지지용 래티스기둥(더블기둥)에 대하여 시공시 운반 및 양중계획을 고려한 용접접합부가 적정한지 재확인 하도록 할 것 6. 가새(브레이스)의 베이스 플레이트의 경우 앵커볼트 홀에 의한 수평전단력 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7. 평면 침 단면도 상 G.L과 1층 바닥이 레벨차가 있어 수평전단력(반력) 전달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격막(슬래브)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가새(브레이스)의 큰 수평전단력(반력)을 지반 또는 파일에 전달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구조격막(슬래브)의 공칭강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것 8. 1층 전체 바닥면적을 고려시 콘크리트 건조수축이나 크리프에 의한 균열 발생이 예상되므로 지연조인트(DELAY JOINT)를 설치하여 초기 균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수립 할 것 9. 본 대상 건축물은 경간 20m 이상의 특수구조물에 해당되므로 착공시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3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⑤항에 의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조치 할 것 10. 구조계산서 목차에 페이지를 표기하여 설계도서로서 형식을 갖추기 바람 11. 지역별 기본풍속 산정시 현 위치를 지도(KDS41 12 그림5.5-1)에 표기하되 울산지역을 확대하여 표기한 후 재산정하기 바람 12. "기본풍속 34m/s를 초과하는 지역 또는 해안가로부터 3km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가운데 중요도(특), 중요도(1)의 건축구조물로 5.8(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풍압실험을 실시하여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을 산정하기 바람 13. 기초와 바닥슬래브의 접합부분에 대한 상세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추가하기 바람 14. Back Truss, Wall Bracing, Roof Bracing 에 대한 계산 근거와 접합부 계산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15. 중요도를 1로 하기로 정하였으면 적용하는 모든 기준은 1을 적용할 것 (ex. 풍하중산정시 'C.중요도계수' 재검토) 16. 파일 지지력에 대한 가정 근거를 제시하고 가정치를 왜 각각 3가지로 고려한 것인지 이유를 제시하기 바람.(추가로, 인발과 압축 가정치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정확하게 표기해 줄 것) 17. 기초파일의 지지력은 시공시 시항타 및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18. 주기둥 하부 페데스탈 최소철근비를 구조기준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할 것. - PD42A 등 1.604 → N.G 19. 주요부재의 응력비가 0.95를 상회하는 부재의 구조안정성을 재검토할 것. - 가공조립공장 3SG1(0.993), 3SG11B(0.995) 등 - 20. 기초 횡방향철근지수를 구조기준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할 것 - PF1 → N.G 21. Prulin 등 2차부재의 구조검토서 미제시 22. 중요도 1(발주처요구사항)적용 - 지진하중/풍하중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장함 → 지진하중 중요도 1(중요도계수 1.2) 풍하중 중요도 2(중요도계수 0.95)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구조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심의일자	2024. 3. 13. ~ 3. 20.

건축종별	[ ] 신축,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현대○○○㈜

대지현황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지번 : 1-2번지	관련지번 : 91필지	
	대지면적 : 710,634㎡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 8,634.99㎡	건폐율 : 1.21%	층수 지하 : / 지상 : 3층
	주용도 : 공장	구조 : 일반철골구조	세대수(호)/동수 : 세대 / 1동
	최고높이 : 26.27m	용적률 : 1.52%	연면적 : 10,809.64㎡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종합의견	1. 구조설계 전반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데크슬래브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이 강재 데크의 한 부위에 집중되어 시공 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명기바람 2. 고장력볼트로 F10T 적용인지 S10T 적용인지 확인바람 3. 크레인 RUN WAY GiRDER의 경우 KDS 14 31 25 4.1.10. 집중하중을 받는 웨브에 대한 국부항복, 크리플링, 횡좌굴 및 압축좌굴강도에 대한 소요강도가 한계상태의 설계강도에 적합한지 재확인 하도록 할 것 4. 크레인 지지용 래티스기둥(더블기둥)에 대하여 시공시 운반 및 양중계획을 고려한 용접접합부가 적정한지 재확인 하도록 할 것 5. 가새(브레이스)의 베이스 플레이트의 경우 앵커볼트 홀에 의한 수평전단력 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6. 철근의 정착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근의 설계항복강도가 550MPa을 초과하는 철근에 대하여 KDS 14 20 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4.1.2 (5)항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7. 1층 슬래브 설계시 기둥반력 및 장비하중이 혼재하므로 보다 상세한 해석 및 검토를 통해 슬래브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 필요 8. 본 대상 건축물은 경간 20m 이상의 특수구조물에 해당되므로 착공시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3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⑤항에 의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조치 할 것 9. 구조계산서 목차에 페이지를 표기하여 설계도서로서 형식을 갖추기 바람 10. 지역별 기본풍속 산정시 현 위치를 지도(KDS41 12 그림5.5-1)에 표기하되 울산지역을 확대하여 표기한 후 재산정하기 바람 11. "기본풍속 34m/s를 초과하는 지역 또는 해안가로부터 3km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가운데 중요도(특), 중요도(1)의 건축구조물로 5.8(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풍압실험을 실시하여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을 산정하기 바람 12. 기초와 바닥슬래브의 접합부분에 대한 상세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추가하기 바람 13. Back Truss, Wall Bracing, Roof Bracing 에 대한 계산 근거와 접합부 계산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14. 중요도를 1로 하기로 정하였으면 적용하는 모든 기준은 1을 적용할 것 (ex. 풍하중산정시 'C.중요도계수' 재검토) 15. 파일 지지력에 대한 가정 근거를 제시하고 가정치를 왜 각각 3가지로 고려한 것인지 이유를 제시하기 바람.(추가로, 인발과 압축 가정치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정확하게 표기해 줄 것) 16. 기초파일의 지지력은 시공시 시항타 및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17. 주기둥 하부 페데스탈 최소철근비를 구조기준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할 것. (사무동 등 동일) 18. 주요부재의 응력비가 0.95를 상회하는 부재의 구조안정성을 재검토할 것. - 사무동 2.3 SG212, SG201 등 - 19. Prulin 등 2차부재의 구조검토서 미제시 20. 중요도 1(발주처요구사항)적용 - 지진하중/풍하중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장함 → 지진하중 중요도 1(중요도계수 1.2) 풍하중 중요도 2(중요도계수 0.95)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